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4. 21 선고 2020가단543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3. 24.

판 결 선 고 2021. 4. 21.

주 문

1. 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0. 체결된 매매계약은 66,624,61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6,624,6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9.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24550호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5. 19. ‘C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 27. C 소유 대구 서구 D, E, F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G)에서 위 판결금채권에 대한 배당금으로 20,297,74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카합5118호로 위 2014가단24550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0. 6. 16. C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984,985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C으로 한 H조합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10. 7. 경료되었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원, 채무자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12. 18. 경료되었다.

피고는 C의 채권자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I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 중인 2019. 6. 10.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2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C의 H조합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고,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며,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20. 1. 31. 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에 따라 2020. 2.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J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C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판결)이 있으면 소송비용상환채권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상환한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소송비용상환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5, 7,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시가 합계는 210,729,500원), 원주시 K 임야 550㎡에 대한 275분의 138 지분, L 임야 1,469㎡에 대한 8582분의 334 지분(시가 합계는 3,425,294원)이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소극재산은 피고에 대한 채무 127,000,000원¹⁾,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 52,446,159원²⁾, H조합에 대한 대출채무(H조합의 각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부분) 43,000,000원³⁾ 이상(2019. 7. 24. 기준으로 총 원리금 합계 45,424,598원)이다.

나)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H조합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부분을 제외한 165,304,902원(= 위 시가 합계 210,729,500원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보다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증가되었다고 판단되는 2019. 7. 24. 기준 대출 원리금 45,424,598원) 상당의 부동산이 소비하기 쉬운 금전 20,000,000원으로 바꾸고, 나머지 부분은 특정한 채권자인 피고에게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켰다고 평가된다.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되므로(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165,304,902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C의 사해의사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재산상태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C에 대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2014가단24550)이 제기되었고,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점을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여 일반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의 항변 등

가) 피고는 자신도 C의 채권자로 정당한 채권 변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유 없다.

나) 피고는 C에게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가 존재하는지 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27. 배당금으로 20,297,740원을 받은 강제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G)는 피고의 신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피고도 그 절차에서 함께 배당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등 일반채권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165,304,902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까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수는 66,627,901원4)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66,624,618원이다. 따라서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범위는 66,624,618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0. 체결된 매매계약은 66,624,61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다. 원상회복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부동산 자체의 회복은 불가능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6,624,6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차윤제

별지

목 록

1. 충청남도 서산시	전 670㎡
2. 충청남도 서산시	전 771㎡
3. 충청남도 서산시	전 367㎡
4. 충청남도 서산시	전 1,211㎡
5. 충청남도 서산시	전 736㎡

1) 피고 스스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C에 대한 채권이 127,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답변서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 27. 그 채권에 대하여 20,297,740원을 회수하여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 11,638,356원[= 원금 40,000,000원 × 연 20% × (1년 + 166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8,659,385원만이 원금 40,000,000원에 충당되어 원금 31,340,616원이 남고 그에 대하여 다시 2016. 1. 28.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9. 6. 10.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52,446,159원[= 원금 31,340,616원 + 2016. 1. 28.부터 2019. 6. 10.까지의 지연손해금 21,105,543원{= 원금 31,340,616원 × 연 20% × (3년 + 134일/365일)}]이다.

3)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 액수다.

4) 소송비용액확정채권 2,984,985원 + 위 남은 이 사건 판결금채권 원금 31,340,616원 + 원금 31,340,616원에 대한 2016. 1. 2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3. 24.까지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2,302,300원[= 원금 31,340,616원 × 연 20% × (5년 + 56일/365일)]